

제28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의원 발의 조례안

(3건)

거창군의회

- 목 차 -

의안번호	건 명	쪽수
2025-14	거창군 통학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안	1
2025-15	거창군 간호인력 및 예비간호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2025-16	거창군 기후변화 대비 작물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거창군 통학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안

(표주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5-14	발의일자	2025. 02. 14.
		발 의 자	표주숙, 이재운, 신중양, 신미정, 김향란, 최준규, 김홍섭, 이홍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1. 제안 이유

거창군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들의 충분한 교육기회 보장과 통학부담 해소를 위해 통학택시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 나. 통학택시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3조)
- 다. 이용 대상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라. 비용 부담 및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5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 나. 예산조치: 필요시
- 다. 합 의: 인구교육과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2025. 02. 07. ~ 02. 12.
 -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불임 참조
 -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거창군 통학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창군에 있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의 충분한 교육 기회 보장과 통학 부담 해소를 위해 통학택시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을 말한다.
2. “학습활동”이란 학생이 학기 중 학교에서 운영하는 수업, 방과 후 프로그램 또는 야간자율학습 등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3. “통학택시”란 거창군수와 협약하여 학생이 통학에 이용하는 택시를 말한다.

제3조(통학택시의 운영)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습활동을 위하여 통학하는 학생들의 통학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통학택시를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이용 대상) 통학택시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생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기관이나 단체 등으로부터 통학 교통비 등을 지원 받는 학생은 제외한다.

1. 군에 있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며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학생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할 것
 - 가. 읍 소재 학교에 다니는 경우: 군청에서 반경 4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지역
 - 나. 면 소재 학교에 다니는 경우: 학교의 소재지 ‘리’ 외 지역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 가. 등교 시 학교 소재지까지 대중교통이 없거나, 운행노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지역에 거주할 것

나. 학습활동을 마친 시점부터 30분 이내 이용 가능한 대중교통이 없거나,
대중교통 운행이 종료 또는 운행 노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지역에 거주할 것

제5조(비용 부담 및 지원) ① 통학택시를 이용하는 학생은 통학택시 요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군수는 통학택시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
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용요금과 그 밖에 세부 지원기준, 신청방법 등은 규칙
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통학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 발생 요인: 통학택시 운영 비용 지원

나. 관련 조문: 등록금 지원(안 제5조)

2. 비용추계의 결과

가. 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 분		1차 연도 (2025년)	2차 연도 (2026년)	3차 연도 (2027년)	4차 연도 (2028년)	5차 연도 (2029년)	합계
세출	군비	162,000	166,536	171,199	175,993	180,920	856,648
	소계(a)	162,000	166,536	171,199	175,993	180,920	856,648

※ 최근 5년간(2020~2025년) 평균 물가상승률 반영(2.8%)

II.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1. 지원대상자 : 102명(등교 17명, 하교 15명, 야간귀가 70명)

※ 등교-하교, 등교-야간귀가 차량 이용 중복 포함

2. 통학택시 운영비 : 25천원×36대×180일= 162,000천원

가. 1일 통학택시 평균 요금 : 25천원(등하교 22천원, 하교 21천원, 야간귀가 31천원)

나. 1일 운행택시 수 : 36대(등교 8대, 하교 8대, 야간귀가 20대)

다. 학교 연 평균 수업 일 수 : 180일

※ 야간귀가차량 운영비 : 130,000천원

작성자 : 인구교육과장 신순화

관 계 법 령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 2024. 12. 20.] [법률 제20579호, 2024. 12. 20., 일부개정]

제23조(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및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31.>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기준에 미달하는 농어업인에게 제1항에 따른 경비와 체험학습비 등 부대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31.>

거창군 간호인력 및 예비간호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준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5-15
----------	---------

발의일자	2025. 02. 14.
발 의 자	최준규, 이재운, 신중양, 신미정, 김향란, 김홍섭, 표주숙, 이홍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1. 제안 이유

이 조례는 간호인력의 근무 여건 개선과 예비간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력 확보 및 외부 유출 최소화를 통해 거창 군민들에게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 나. 군수의 책무 (안 제3조)
- 다. 간호인력 지원(안 제4조)
- 라. 예비간호인력 지원 (안 제5조)
- 마. 중복지원 제한 및 대장관리 (안 제6조 ~ 제7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3조제2항
 - 「지방자치법」 제28조제1항
 -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
- 나. 예산조치 : 필요시
- 다. 합 의 : 보건정책과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 해당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2025. 02. 04. ~ 02. 10.
 - 나) 예고결과 : 의견없음
 - 3) 비용추계서 : 불임 참조
 - 4) 성별영향평가 : 해당없음

거창군 간호인력 및 예비간호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간호인력의 근무여건 개선과 예비간호인력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수 간호인력의 확보로 거창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간호인력”이란 군에 주소를 두고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간호사로서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의료기관(「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예비간호인력”이란 군에 주소를 두고 경남도립거창대학에서 간호사가 되기 위한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 중 졸업 후 군 소재 의료기관에 취업하기로 약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우수 간호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간호인력의 인권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 및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③ 군수는 교육기관 및 보건의료기관과의 연계 사업을 추진하여 예비간호인력의 군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간호인력 지원) 군수는 간호인력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간호인력 단체에 예산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

2. 적정 노동시간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

3. 그 밖에 간호인력의 건강권 등을 위한 사업

제5조(예비간호인력 지원) 군수는 예비간호인력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중복지원 제한 등) ① 군수는 간호인력 및 예비간호인력이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② 군수는 간호인력 및 예비간호인력이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연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제7조(대장관리) 군수는 지원금 지급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효율을 위해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창군 간호인력 및 예비간호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1) 간호인력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지원
- 2) 예비간호인력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 지원

나. 관련 조문

- 1) 간호인력 지원(안 제4조)
- 2) 예비간호인력 지원(안 제5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 제1항제2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가.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나. 지원사유 발생시 예산 확보 예정

작성자 보건정책과장 조 호 경

관 계 법 령

□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지역 내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 보건의료환경 및 특성에 적합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거창군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향란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25-16	발의일자	2025. 02. 14.
		발 의 자	김향란, 이재운, 신중양, 신미정, 최준규, 김홍섭, 표주숙, 이홍희, 신재화, 박수자, 김혜숙

1. 제안이유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정착을 위하여 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와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안 제1조 ~ 제3조)
- 나.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다.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재배 현황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라.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마. 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 바.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재배와 관련 교육 훈련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사.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소비 촉진에 기여하기 위한 홍보와 우선구매 요청에 관한 사항(안 제9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제28조, 「지방재정법」 제17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 나. 예산조치: 필요시

다. 합 의: 미래농업과

라. 기타사항

1) 규제심사: 해당없음

2) 입법예고

가) 예고기간: 2025. 02. 05. ~ 02. 10.

나) 예고결과: 의견없음

3) 비용추계서: 붙임 참조

4) 성별영향평가: 해당없음

거창군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에 대비하여 작물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정착을 위하여 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가 소득 증대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후변화”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다.
2. “기후변화 대비 작물”이란 기후변화로 인하여 다양한 작물재배 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작물을 말한다.
3. “농업인등”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제4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을 위하여 거창군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목표 및 추진방향
2. 기후변화 대비 작물 조사·재배 등 현황
3. 제2호에 따른 작물재배체계도의 작성
4.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기술의 개발·보급 및 교육훈련 등
5.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생산 및 가공, 유통, 판매 등 지원

6. 그 밖에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재배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육성사업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기후변화 대비를 위한 신소득작물 개발 및 보급
2. 기후변화 대비 작물 재배 농가 교육 및 컨설팅
3. 기후변화 작물의 생산·가공·유통 등 기반 구축
4. 기후변화 대비 작물 전문인력 양성
5.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을 위한 판로 개척 및 소비촉진
6. 그 밖에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원회의 심의) 군수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거창군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자문 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제6조에 따른 육성사업
3. 그 밖에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교육훈련·컨설팅 등) ① 군수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등을 대상으로 재배와 관련된 지식·기술 등을 보급·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 및 기후변화 대비 작물 재배 농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컨설팅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 및 컨설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소비촉진 등) 군수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소비 촉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거창군에서 생산한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에 필요한 사업지원 예산

나. 관련 조문: 기후대비 작물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지원(안 제6조)

2. 미첨부 근거 규정: 거창군 의안의 비용추계 조례 제4조 제1항 1호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

- 재배현황 실태조사와 기본계획 수립 후 사업비용 추계

4. 작성자: 미래농업과장 이 창 진

관 계 법 령

■ 「지방자치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951호, 2024. 1. 9.,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 관할 구역 안 행정구역의 명칭·위치 및 구역의 조정

나. 조례·규칙의 제정·개정·폐지 및 그 운영·관리

다. 산하(傘下) 행정기관의 조직관리

라. 산하 행정기관 및 단체의 지도·감독

마. 소속 공무원의 인사·후생복지 및 교육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사. 예산의 편성·집행 및 회계감사와 재산관리

아. 행정장비관리, 행정전산화 및 행정관리개선

자.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

차. 주민등록 관리

카.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각종 조사 및 통계의 작성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 못·늪지·보(洑) 등 농업용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나.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 지원

다. 농업자재의 관리

라. 복합영농의 운영·지도

마. 농업 외 소득사업의 육성·지도

바. 농가 부업의 장려

사. 공유림 관리

아. 소규모 축산 개발사업 및 낙농 진흥사업

자. 가축전염병 예방

차. 지역산업의 육성·지원

카. 소비자 보호 및 저축 장려

타. 중소기업의 육성

파.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지원

하. 우수지역특산품 개발과 관광민예품 개발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가. 지역개발사업

나. 지방 토목·건설사업의 시행

다.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

라. 지방도(地方道), 시도(市道)·군도(郡道)·구도(區道)의 신설·개선·보수 및 유지

마.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바. 농어촌주택 개량 및 취락구조 개선

사. 자연보호활동

아. 지방하천 및 소하천의 관리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차. 소규모급수시설의 설치 및 관리

카. 도립공원, 광역시립공원, 군립공원, 시립공원 및 구립공원 등의 지정 및 관리

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녹지, 유원지 등과 그 휴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파.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하. 지방 궤도사업의 경영

거.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너.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가.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설치·운영·지도

나. 도서관·운동장·광장·체육관·박물관·공연장·미술관·음악당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

다. 시·도유산의 지정·등록·보존 및 관리

라. 지방문화·예술의 진흥

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가.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감독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7. 국제교류 및 협력

가. 국제기구·행사·대회의 유치·지원

나.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 「지방재정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1호, 2023. 8. 8., 타법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 7. 16.>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약칭: 탄소중립기본법)

[시행 2024. 10. 22.] [법률 제20514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2. 31.>

1. “기후변화”란 사람의 활동으로 인하여 온실가스의 농도가 변함으로써 상당기간 관찰되어 온 자연적인 기후변동에 추가적으로 일어나는 기후체계의 변화를 말한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약칭: 농업식품기본법)

[시행 2025. 1. 23.] [법률 제20503호, 2024. 10. 22., 일부개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2015. 6. 22., 2020. 12. 8.>

1. “농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5. “농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 읍·면의 지역

나. 가목 외의 지역 중 그 지역의 농업, 농업 관련 산업, 농업인구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

6. “농수산물”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농산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나. 수산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활동 및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식품”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나.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

8. “식품산업”이란 식품을 생산, 가공, 제조, 조리,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산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이란 농업·농촌이 가지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가. 식량의 안정적 공급

나. 국토환경 및 자연경관의 보전

다. 수자원의 형성과 함양

라.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

마. 생태계의 보전

바. 농촌사회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의 보전

10. 삭제 <2015. 6. 22.>

11. 삭제 <2015. 6. 2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농어업경영체법)

[시행 2024. 9. 27.] [법률 제20414호, 2024. 3. 26.,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5. 27., 2015. 1. 6., 2015. 6. 22., 2021. 8. 17.>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2. “농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4. “어업인”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5. “어업법인”이란 제16조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과 제19조에 따른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

6. “어업경영체”란 어업인과 어업법인을 말한다.

7. “농어업경영체”란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를 말한다.
8. “농어촌 관광휴양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을 말한다(다만,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토지와 시설의 분양은 제외한다).